영종하늘도시 한신더휴 2차 공공분양 주택
무순위(사후) 2차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본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2-3393-3320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공공	비규제지역	없음	없음	3년	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1.09.03(금)	25.01.10.(금)	25.01.15.(수)	25.01.20.(월)	25.02.03.(월)	25.02.04.(화)

I 공통 유의사항

◆ 유의 사항

- 본 주택은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로 현재 견본주택 운영이 종료되었으며, 현장 주변 등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공공주택으로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만19세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은 계약시 공급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 90%는 계약일로부터 60일 내 납부하여야 합니다(25년 4월 4일까지,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또한 잔금대출은 사업주체에서 알선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은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변경이 불가합니다.(변경 및 취소, 옵션추가 불가, 승계 거부 시 계약불가, 비용납부 후 계약체결)
- 본 주택은 이미 공사 완료된 아파트로서 현 상태 그대로 분양함에 따라 마이너스옵션이 적용되자 아니하며, 이미 시공된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에 대하여 취소등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2025년 1월 22일(10:00~16:00) 세대 관람을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일정은 당첨자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입니다.(해당 관람일자 이외에 방문을 요구할 수 없음)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며 당첨되더라도 재당첨제한 등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청약신청이 제한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화상담(02-3393-3320)을 실시하오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12.1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신청자의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 당첨사실여부[동 주택(영종하늘도시 한신더휴 2차) 및 부적격당첨자는 제외], 소득 및 자산요건을 불문하며, 당첨 및 계약체결 시에도 재당첨 제한 및 당첨자 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O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Ⅱ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은 이미 공사 완료된 아파트로서 현 상태 그대로 분양함에 따라 마이너스옵션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미 시공된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에 대하여 취소등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1.10.(금)**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4910236**입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9.03.(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1000620**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 단지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5.01.15.(수)**	**2025.01.20.(월)**	**2025.02.03.(월)**	**2025.02.04.(화)**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한신공영㈜) 서울사무소 (주소: 서울시 서초구 잠원로 94, 한신빌딩)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당첨자 대상 세대 관람**

- 세대 관람 일시 : 2025.01.22.(수) 10:00~16:00

- 타입별(74A, 84A, 84D) 관람 시간이 상이하며, 자세한 세부 일정은 당첨자에게 개별 통지 예정입니다.

- 세대 관람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개별 안내된 관람일자 이외에 추가 방문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인천시 중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3년 (최초 당첨자 발표일(2021.09.24.)로부터 3년이 도과하였으므로 실질적 전매 가능함)**

Ⅲ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880-2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22층 12개동 총 870세대 중 잔여 5세대**
■ **입주시기** : 계약일로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금회 공급분에 대해서는 잔금 납부 후 즉시 입주 가능)
■ **공급대상**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잔여세대수	잔여세대 동·호 내역	
					동	호
2024910236	01	074.7500A	74A	1	109	1803
	02	084.9700A	84A	3	105	202, 204
					107	1503
	03	084.9400D	84D	1	105	1601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동호수	공급금액			합계	계약금(10%)	잔금(9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약시	융자금 제외 금액 (25년 4월 4일까지)	주택도시기금
074.7500A	74A	109-1803	113,945,670	218,354,330	-	332,300,000	33,230,000	224,070,000	75,000,000
084.9700A	84A	105-202	125,055,630	239,644,370	-	364,700,000	36,470,000	253,230,000	75,000,000
		105-204	125,055,630	239,644,370	-	364,700,000	36,470,000	253,230,000	75,000,000
		107-1503	127,627,380	244,572,620	-	372,200,000	37,220,000	259,980,000	75,000,000
084.9400D	84D	105-1601	128,210,310	245,689,690	-	373,900,000	37,390,000	261,510,000	75,000,000

※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택도시기금 안내
- 본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 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융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동호수	구분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잔금(90%) 25년 4월 4일까지	비 고
109-1803	발코니확장	9,730,000	973,000	8,757,000	침실2,3분리형(가변형벽체 설치)
	빌트인식기세척기	900,000	90,000	810,000	
	와이드주방(빅아일랜드+상부장식장)	400,000	40,000	360,000	
	엔지니어드스톤	2,900,000	290,000	2,610,000	
	거실 우물천정+간접조명	400,000	40,000	360,000	
	포세린타일(거실+주방)	1,300,000	130,000	1,170,000	
105-202	발코니확장	10,120,000	1,012,000	9,108,000	침실2,3분리형(가변형벽체 설치)
105-204	발코니확장	10,120,000	1,012,000	9,108,000	침실2,3분리형(가변형벽체 설치)
	시스템에어컨(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6,600,000	660,000	5,940,000	
	현관 중문	1,100,000	110,000	990,000	
107-1503	발코니확장	10,120,000	1,012,000	9,108,000	침실2,3분리형(가변형벽체 설치)
	엔지니어드스톤(주방 상판+벽)	3,000,000	300,000	2,700,000	
	포세린 타일(거실+주방)	1,600,000	160,000	1,440,000	
105-1601	발코니확장	10,670,000	1,067,000	9,603,000	침실2,3분리형(가변형벽체 설치)
	하이브리드쿡탑	640,000	64,000	576,000	
	엔지니어드스톤(주방 상판+벽)	3,100,000	310,000	2,790,000	
	알파룸&팬트리, 복도 알파룸 팬트리	600,000	60,000	540,000	
	거실 우물천정+간접조명	500,000	50,000	450,000	
	포세린 타일(거실+주방)	1,600,000	160,000	1,440,000	

※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은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변경이 불가합니다.(변경 및 취소, 옵션 추가 불가, 승계 거부 시 계약 불가, 비용납부 후 계약 체결)

※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Ⅳ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청약신청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Ⅴ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01.20.(월) ~ 2025.01.29(수)**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4.01.20.(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VI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 서류**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O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약서	본인	• 계약장소에 비치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O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O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발급용(용도 : 당첨자 자격확인 /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3자 대리 신청불가)
O		인감도장 및 신분증	본인	• 본인 신청 시는 본인의 신분증 제출, 배우자가 대리 신청시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 본인 신청 시 서명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 도장 지참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함
O		출입국 사실 증명원	본인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외에 체류중이며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체류중인 경우 청약불가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 출입국기록 출력여부 Y로 설정하여 발급
	O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등본,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O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서류	• 기타 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 **당첨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시 : **25.02.04.(화) 10:00~16:00**
-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해당서류	비고
공통서류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무통장 입금증 또는 입금 확인증 ※ 현장수납 불가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인감도장	자격 확인 서류 제출시 제출한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청약자격 검증 서류 일체	자격 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기타 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3자 대리 계약 시 (본인 외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공통서류	상기 공통서류 일체를 계약자 본인이 발급하여 대리인이 제출
	계약자의 인감도장	인감도장 날인 및 대조용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아파트 계약위임용 (계약자 본인발급분에 한함)
	위임장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대리인 도장 날인(서명)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일정 : 추후 통보 예정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 한도 확인).

Ⅶ 참고사항

■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합니다.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합니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주택법 시행령」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합니다.)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합니다.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 합니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합니다. 이하 이 호에서 같습니다)일 경우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합니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경우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합니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문의 : 02-3393-3320**